

## 2017 캘거리 이민자 협회(ISC) 무료 소득신고 서비스 이용 자격요건

캘거리 이민자 협회에서는 기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고객분들께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무료 소득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SC의 무료 소득신고 서비스의 이용 자격 판정을 위해 다음 항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중 한가지 경우라도 해당 시, 해당 가족은 ISC 소득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 사항을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혹은 가족 중에:	해야 할 일:
1	2017년에 캐나다에 이민온 경우. (올해 소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6년에 캐나다 거주를 시작 및 체류했어야 합니다)	첫 소득신고를 하려면 2018년 3월/4월까지 기다리세요
2	<b>자영업, 하청업 소득 혹은 사업경비를 신고하는 경우</b>	회계사 혹은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3	<b>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b>	기타 무료 소득신고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세요
4	해외 체류중인 부양가족에 보내는 생활비를 신고하는 경우(새 조항)	
5	캐나다 이민 후 <b>해외 소득</b> 이 발생한 경우	
6	<b>임시 소득</b> 이 있는 경우(예: T4 슬립 발급 없이 급여를 현금 혹은 수표로 받은 경우), 그리고 그 총액이 연간 \$3,500 이상인 경우	회계사 혹은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7	가족 전체의 <b>이자 소득</b> 이 \$1,000 이상인 경우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8	<b>사업</b> 혹은 <b>임대자산을 운영</b> 하는 경우	회계사 혹은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9	<b>주식</b> 이나 <b>채권</b> 보유한 경우(은행을 통해 구입하여 관련 소득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T3 나 T5 슬립 발급 받은 경우 제외)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10	2016년에 <b>파산</b> 했거나 파산 신청한 경우	파산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11	2016년에 사망한 경우	55세 이상이라면 커비센터(Kerby Centre)로 전화 403-265-0661 혹은 방문 1133-7th Ave. SW, Calgary, AB T2P 하세요.
12	2016년 말에 <b>임시근로자(워킹비자)</b> 신분이었던 경우	센터포뉴커머(Centre for Newcomers): 전화 403-536-8244 혹은 이메일 taxclinic@centrefornewcomers.ca 로 연락하세요 (소득신고서비스 예약은 2월 중순경 시작합니다)
13	ISC의 소득기준액을 초과한 경우(하단 설명 참조)	회계사 혹은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14	본인 혹은 배우자가 2016년도에 캐나다 내/외에서 집,콘도,아파트,주식,보험,보석,미술품 혹은 수집품(예: 우표나 동전)을 판매한 경우 (새조항)	
15	2016년 이전에 캐나다로 이민하였고, 본인 혹은 가족 중에 2016년에 해외에서 집,콘도,아파트,주식,보험,보석,미술품 혹은 수집품(예: 우표나 동전)을 구매한 경우 (새조항)	

### (상단 13 번항 안내) "가족 총소득" 계산법

- **자녀의 소득을 가족 총소득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 **"가족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캐나다내 고용소득 (T-4), 임시 소득, 정부 초청 난민 지원금, 사회 보조금 그리고/또는 산재보험금 (T5007), 고용 보험 (T4E), 육아 보조금 (RC62), 투자소득 (T5 or T3), 노후보장적금 (T4RRSP or T4RIF 출금액만 해당), 학자금 지원금(T5007, T4E or T4A), 및 장학금(T4A).
- 캐나다 **이민 후 발생한 모든 해외 소득**을 포함합니다.
- **"가족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부가가치세 환급액(GST); 캐나다 자녀 세액공제(CCTB), 연방 저소득 근로자 소득세 공제 혹은 알버타 저소득 근로자 가정 세금 공제.
- 부모님이 ISC의 소득신고 프로그램의 이용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자녀분이 이용자격이 된다면 자녀분에 한해 소득신고를 도와 드립니다.

(다음 장 계속)

## 2017 캘거리 이민자 협회(ISC) 무료 소득신고 서비스 이용 자격요건

귀하의 가정 총소득이 아래기준보다 **낮아야** 무료 소득신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부모 가정	최대 가정 소득	한부모 가정	최대 가정 소득
1 person	\$30,000	1 person	\$30,000
Couple	\$40,000	1 dependent	\$35,000
1 dependent	\$42,500	2 dependents	\$37,500
2 dependents	\$45,000	3 dependents	\$40,000
3 dependents	\$47,500	4 dependents	\$42,500
4 dependents	\$50,000	5 dependents	\$45,000
5 dependents	\$52,000	6 dependents	\$47,500
6 dependents	\$55,000	7 dependents	\$50,000
7 dependents	\$57,500	8 dependents	\$52,500
Extra Person	\$2,500	Extra Person	\$2,500

**추가 정보 - ISC의 무료 소득신고 서비스 자격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자영업, 하청업으로 임시소득이 있는 분, 혹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임대 자산이 있어서 경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회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맡기시어 비용청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사가** 필요하신 경우,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을 요청하시거나 전화번호부 (**Yellow Pages**-책 혹은 인터넷상) 의 회계사 "**Accountants**" 란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문 세무 대리인이 필요하시다면, 가족 혹은 친구에게 추천을 요청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전화번호부 (**Yellow Pages**-책 혹은 인터넷상) 의 전문 세무 대리인 "Tax Return Preparation" 란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높은 수준의 영어/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또한 **캐나다 국세청의 소득신고 및 환급 안내서** "Canada Revenue Agency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없다면, 직접 소득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 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는 매우 상세하고 복잡합니다. 안내서와 소득신고 양식은 캐나다 우편물 취급소 전역에 2월 초부터 무료로 배포됩니다. 직접 소득신고를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부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신고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역시 **캐나다 국세청의 소득신고 및 환급 안내서** "Canada Revenue Agency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에 명시된 관련 세무 지식이 필요하므로 직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소득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일 개인이 소득신고를 위해 직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부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